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- 35호

「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26일

강릉시의회의장

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강릉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문화창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인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를 명시함
(안 제2조)
- 문화재단의 지원·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
(안 제2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3
- 팩스: 033-640-4070

4. 참고사항

-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민법」 제32조”를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 및 「민법」 제32조”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본계획 수립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재단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재단의 육성·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시책방향
2.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·프로그램·시설·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
3.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3조제1항제12호 중 “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립 및 운영) ①강릉문화재단 (이하 “재단” 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설립 및 운영) ①----- ----- 한다)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 및 「민법」 제32조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의2(기본계획 수립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문화재단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단의 육성·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방향 2.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·프로그램·시설·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.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정관)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~ 11. (생략)

12. 그 밖에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(생략)

제3조(정관) ①-----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----- 시장-----

② (현행과 같음)